

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1991. 12. 30.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위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1년 12월 23일

○ 회부일자 : 1991년 12월 23일

다. 상정일자 : 제 74 회 정기회

○ 제 6 차 내무위원회 (1991. 12. 27) 상정
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민방위국장 전 석 조)

가. 제안이유

광역소방행정체제 전환에 따라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체제를 정비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, 시·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통합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1) 조례명칭 개정

○ 시·군 조례 → 도 조례

2) 추천권자 및 인원조정 (제3조)

○ 추천권자 : 소방서장, 읍·면장 → 의용소방대장(부녀대, 지역대 포함)

○ 추천범위 : 장학생수 2배수 범위 → 의용소방대 1개대당 2명 범위내

3) 선발권자 조정 (제4조)

- 선발권자 : 시장.군수 → 군수.소방서장
- 결과보고 (신설) : 소방서장.군수 → 도지사

4) 장학생 정원조정 (제5조)

- 소방서.군당 15명
- 의용소방대 및 부녀의용소방대원수에 따라 차등조정(최대25명)
< 대원 60 ~ 110명 기준 10명, 20명당 1명 증원 >

5) 장학금 지급절차 (제7조) : 시.군 예산 → 도 예산

6) 지급정지 사유보고자 조정 (제8조)

- 소방서장.읍.면장이 시장.군수에게 보고
- 소방서장.군수가 도지사에게 보고

7) 장학생의 관리권자 조정 (제9조)

- 시장.군수 → 소방서장.군수

8) 장학금 특별회계 설치권자 및 관리권자 조정 (제10조)

- 설치권자 : 시장.군수 → 도지사
- 설치기관 : 시.군 → 도

9) 경과규정 신설 (부칙 제2조)

- 시.군 조례선발 장학생 → 도 조례 선발장학생으로 간주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민귀식)

- 가. 종전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.군수가 설치 운영해오던 의용소방대가 소방법 (법률 제4419호 1991.12.14 공포) 개정으로 인하여 소방행정체제가 광역소방 행정체제로 개편되면서

개정된 소방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을 시·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도 시·군 예산에서 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조정된 바 있음

- 나. 따라서 시·군 조례로 개정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제도를 도 조례로 전환하게 되어 종전 시·군에서 시행하여 오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체계를 정비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, 의용소방대원의 활성화 및 사기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화합 안정 차원에서 충청북도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도의 원안대로 의결
(참석 7인 , 찬성 7인)

7. 소수의 의견의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